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9-147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19. 8. 1.자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간사변경(안 제10조6항)

- “예산부서” 담당 부서장을 “주민참여예산”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없음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6항 중 “예산부서”를 “주민참여예산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<u>예산부서</u>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.</p>	<p>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</p> <p>-----</p> <p>-- <u>주민참여예산</u> -----</p> <p>---</p>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마포1번가연구단 안수영 (☎3153-8074)